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.

발 의 자 : 이광희 · 서미화 · 전진숙
김문수 · 안태준 · 이주희
윤건영 · 임미애 · 김남희
양부남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,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992호)의 의결을 전

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2	사용료등의 감면	2030. 12. 31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